

##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 2021. 12. 21. 의회규칙 제 54호  
일부개정 2022. 4. 28. 의회규칙 제 61호(「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3. 11. 8. 의회규칙 제 65호  
일부개정 2024. 5. 17. 규칙 제1661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5. 5. 16. 의회규칙 제 7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지방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2025. 5. 16.>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  
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안양시의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  
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  
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2023. 11. 8., 2025. 5. 16.>

1. 삭제 <2025. 5. 16.>
2. 삭제 <2025. 5. 16.>

3. 삭제 <2025. 5. 16.>
4. 삭제 <2025. 5. 16.>
5. 삭제 <2025. 5. 16.>
6. 삭제 <2025. 5. 16.>
7. 삭제 <2025. 5. 16.>
8. 삭제 <2025. 5. 16.>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삭제 <2025. 5. 16.>
2. 삭제 <2025. 5. 16.>
3. 삭제 <2025. 5. 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2025. 5.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1. 8.>

1. 삭제 <2023. 11. 8.>
2. 삭제 <2023. 11. 8.>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 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제12조 삭제 <2025. 5. 16.>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5. 5.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5. 5. 16.>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5. 5. 16.>

② 삭제 <2025. 5. 16.>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

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부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5. 5. 16.>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6.>

⑦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부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본조신설 2023. 11. 8.]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삭제 <2025. 5. 16.>

### 제3장 임용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5. 5. 16.>

제21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5. 5.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전문개정 2025. 5. 16.]

제2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11. 8., 2025. 5. 16.>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또는 점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 11. 8.>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15의2와 같고,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1. 8.>

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총 2.4점의 가산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신설 2023. 11. 8.>

[제목개정 2023. 11. 8.]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와 같다. <개정 2025. 5. 16.>

제27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8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출 예외 적용)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외에 거주하거나 관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합가하기 위한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5. 5. 16.]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5. 16.]

####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8. 의회규칙 제6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8. 의회규칙 제6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규칙 제16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부칙 <2025. 5. 16. 의회규칙 제7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15의2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비 고  |
|----|--------------------------|--|
| 1  |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 시·구, 읍·면·동장 발행   |
| 2  |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
| 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 5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6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7  |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삭제 <2025. 5. 16.>

[별표 3] 삭제 <2025. 5. 16.>

[별표 4] <개정 2025. 5. 1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 관련)**

| 직렬 \ 직류 |      | 계급       |           |   |
|---------|------|----------|-----------|---|
|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자격증의 구분<br>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br>기사(6년),<br>산업기사(9년),<br>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br>산업기사(6년) | 기사,<br>산업기사(3년),<br>기능사<br>(4년),<br>국제기능올림픽<br>대회 입상자<br>(2년) | 산업기사,<br>기능사<br>(2년),<br>국제기능올림픽<br>대회 입상자,<br>전국기능경기대<br>회 입상자<br>(2년) |

비 고

-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개정 2025. 5. 1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br>데이터분석   |
|     | 데 이 터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br>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br>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br>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br>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br>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br>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br>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br>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br>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br>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br>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br>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br>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br>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br>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br>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 보 건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br>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br>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br>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br>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br>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br>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
|     |       | 수 질   |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br>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환 경  | 폐 기 물 |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br>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지 적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 지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교통시설 | 도시교통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도시교통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br>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br>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br>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      | 계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통신기술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전송기술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전자통신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행정   | 일반행정  | 변호사   | 변리사   |   |                        |   |
|      | 법무행정  | 변리사(4)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br>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데 이 터 |   |   |   |                        |   |
| 공 업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br>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br>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br>무대음향전문인3급                    |
| 보 건  | 보 건   | 의사(2)<br>한의사(2)<br>치과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한약사(7)<br>조산사(12)<br>간호사(12)<br>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br>약사(3)<br>한약사(3)<br>조산사(6)<br>간호사(6)<br>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br>약사<br>한약사<br>조산사(3)<br>간호사(3)<br>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br>간호사<br>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 환 경  | 일반환경  | 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위생사(12)<br>환경측정분석사(7)<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수의사(3)<br>약사(3)<br>위생사(8)<br>환경측정분석사(3)<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수의사<br>약사<br>위생사(5)<br>환경측정분석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위생사(2)<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위생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
| 시 설  | 건 축   | 건축사(5)<br>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 건축사<br>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
|      | 디 자 인 | 건축사(5)  | 건축사   |   |                        |   |
| 속 기  | 속 기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 운 전  | 운 전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계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개정 2025. 5. 1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br>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br>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한시<br>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6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7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8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9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 간 선 택 제<br>임 기 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한 시<br>임 기 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 간 선택 제<br>임 기 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한 시 임 기 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6] 삭제 <2025. 5. 16.>

[별표 7] 삭제 <2025. 5. 16.>

[별표 7의2] <개정 2025. 5. 16.>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2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 가산대상<br>자 격 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직업상담 사2급, 사회조사분석 사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 1급, 물류관리사, 철 도교통안전관리자, 직 업상담사2급, 사회조 사분석사2급, 임상심 리사2급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 2] 2. 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의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그 밖의 법 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7의3] <개정 2025. 5. 1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2관련)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헌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행정   | 일반행정 | -  | 번호사<br>변리사   |
|      | 법무행정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번호사  |
| 전 산  | 전 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 데이터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br>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br>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br>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보건   |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능사 : 식품가공<br><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보 건 | 보 건  |  | 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br><br>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br><br>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br><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 수 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br><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br><br>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br><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br><br>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br><br>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br><br>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br><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환경  | 폐기물             |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시설  | 도시계획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br>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건축사   |
|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건축사   |
|     | 측지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교통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     | 도시교통<br>시설<br>계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시 설  | 디 자 인   |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br>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br>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br>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건축사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      | 통신기술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 전송기술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전자통신 기술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개정 2025. 5. 16.>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임용예정 직급<br>직무분야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경찰공무원                      | 총경         | 경정             | 경감<br>감위   | 경사         | 경장 |
| 소방공무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br>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군인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br>준위<br>원사 | 상사<br>중사   | 하사         |    |
| 교육공무원<br>(사립학교교원포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사            |            |            |    |
|                       | 초·중·고등학교교원<br>및 기타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br>별표 11 적용<br>대상자 | 24호봉<br>이상 | 16호봉<br>이상     | 12호봉<br>이상 | 11호봉<br>이하 |    |
|                       | 공무원보수규정<br>별표 12 적용<br>대학봉급액란<br>적용대상자  | 17호봉<br>이상                 | 11호봉<br>이상 | 7호봉<br>이상      | 6호봉<br>이하  |            |    |
|                       | 공무원보수규정<br>별표 12 중<br>전문대학봉급액란<br>적용대상자 | 19호봉<br>이상                 | 13호봉<br>이상 | 9호봉<br>이상      | 8호봉<br>이하  |            |    |
| 관사·검사                 | 4호봉<br>이상                               |                            |            |                |            |            |    |
| 기능직공무원                |   |                            | 6급<br>이상   | 7급             | 8급         | 9급<br>이하   |    |
| 관련직무분야<br>박사학위<br>소지자 | 박사학위<br>소지 후<br>4년이상                    | 박사학위<br>소지자                |            |                |            |            |    |
| 관련직무분야<br>민간근무경력자     | 임용예정 직급에<br>상당하는 관리자경력<br>3년이상          |                            | 6년         | 3년             | 3년         | 3년         |    |

비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9] <개정 2025. 5. 1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4항 관련)

| 직 렬  | 직 류    | 관 련 학 과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환 경  | 일반환경   |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
| 시 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 건 축    | 건축(건축설비)  |
|      | 지 적    |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
|      | 측 지    |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
|      | 통신기술   |   |
|      | 전송기술   |   |
|      | 전자통신기술 |   |
| 보 건  | 보 건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 지적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 근무경력 및<br>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삭제 <2025. 5. 16.>

[별표 11] 삭제 <2025. 5. 16.>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2조제1항 관련)

| 계 급 | 연 구 직  | 지 도 직   |
|-----|--|---|
| 2 급 |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3 급 |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4 급 |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5 급 |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
| 6 급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7 급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
| 8 급 |  |   |
| 9 급 |  |   |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2조제2항 관련)

| 구분                                       |                                    | 상당 계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일반직                                      |                                    | 4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기관·부서의<br>장인<br>연구관<br>지도관 | 연구관<br>지도관                           | 연구사<br>지도사                           |                                    |  |   |    |
| 임기제<br>공무원                               | 일반임기제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국가)전문임기제                          | "가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나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다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라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br>"마급"<br>봉급한계액의<br>6할을 초과한<br>봉급을 받고<br>채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br>"마급"<br>봉급한계액의<br>6할 이하의<br>봉급을 받고<br>채직한 기간 |    |
|  | (지방)전문임기제                          | "가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나급"으로<br>채직한 기간                     |                                      |                                    |  |   |    |
|  | 한시임기제                              |                            | "5호"로<br>채직한 기간                      | "6호"로<br>채직한 기간                      | "7호"로<br>채직한 기간                    | "8호"로<br>채직한 기간  | "9호"로<br>채직한 기간   |    |
|  | 시간선택제임기제                           |                            | "가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나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다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라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마급"으로<br>채직한 기간  |    |
| 전문경력관                                    |                                    | "가"군<br>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br>이하                      | "나"군<br>28호봉 이상                      | "나"군<br>27호봉 이하                    | "다"군<br>28호봉 이상  | "다"군<br>27호봉 이하   |    |
| 별정직공무원                                   |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경찰공무원                                    |                                    | 총경                         | 경정                                   | 경감<br>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소방공무원                                    |                                    | 소방정<br>지방소방정               | 소방령<br>지방소방령                         | 소방경<br>소방위<br>지방소방경<br>지방소방위         | 소방장<br>지방소방장                       | 소방교<br>지방소방교   | 소방사<br>지방소방사  |    |
| 군인                                       |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br>·중사   | 하사  |    |
| 군무원(특정직)<br>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br>경호공무원(특정직)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교육<br>공무원                                | 대 학 교 원<br>(전문대학 포함)               |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    |
|  | 초·중등<br>교원<br>및<br>기타<br>교육<br>공무원 | 초·중등교원<br>봉급표<br>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    |
|  |                                    | 대학교원<br>봉급표<br>적용대상자       | 대학 :<br>17-23호봉<br>전문대학 :<br>19-25호봉 | 대학 :<br>11-16호봉<br>전문대학 :<br>13-18호봉 | 대학 :<br>7-10호봉<br>전문대학 :<br>9-12호봉 | 대학 :<br>6호봉이하<br>전문대학 :<br>8호봉이하                         |   |    |
| 판사·검사                                    |                                    | 4-2호봉                      |                                      |                                      |                                    |  |   |    |

[별표 14] <개정 2025. 5.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 직렬 \ 계급  | 5 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행정, 사회복지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전산       | 기술사(정보관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
| 공업 (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조선, 방송통신, 교통, 궤도장비정비, 승강기)<br>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자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br>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운할관리,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교통, 조선, 궤도장비정비, 승강기)<br>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3급) |
| 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광해방지, 인간공학)<br>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환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토양환경, 자연환경 관리, 방사전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위생사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농립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
| 시설<br>(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기사(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
| 시설<br>(토목)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
| 시설<br>(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수)  |
| 시설<br>(지적)   | 기술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시설<br>(측지)   | 기술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 시설<br>(교통)   |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방 송 통 신<br>(통 신 기 술)     |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br>응용,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br>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br>전파전자통신)<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br>사무자동화, 전자, 정보처리, 무<br>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br>전자계산기) |
| 방 송 통 신<br>(전 자 통 신 기 술)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br>퓨터시스템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br>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br>처리, 전자계산기)<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br>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무<br>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선<br>로)      |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  
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이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의 표 제  
1호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  
정을 할 수 없다.

[별표 15] <개정 2025. 5. 16.>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의 가산점(제25조 관련)

| 구 분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 기준점수    | 가산점  |
|-------------|-----------------------|---------|------|
| 영어          | 토플(TOEFL IBT)         | 71점 이상  | 0.25 |
|             | 토익(TOEIC)             | 700점 이상 |      |
|             | 텝스(TEPS)              | 340점 이상 |      |
|             | 지텔프(G-TELP) Level2    | 65점 이상  |      |
|             |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EX)   | 625점 이상 |      |
|             |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AT)   | 60점 이상  |      |
|             |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 140점 이상 |      |
|             | 텝스스피킹(TEPS SPEAKING)  | 60점 이상  |      |
|             | 오픽(OPIc)              | IM3 이상  |      |
| 그 밖의<br>외국어 | 서울대 어학능력검정(SNULT)     | 60점 이상  | 0.25 |
|             |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EX)   | 625점 이상 |      |
|             |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FLAT)   | 60점 이상  |      |

- 비 고: 1. 위의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승진임용 시 이  
미 가산점이 반영된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해당 언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및 말하기 부분을 제외  
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토플 36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Level2 43점, SNULT 30점, FLEX 375점)

[별표 15의2] <개정 2025. 5. 16.>

실적가점 부여 기준표 (제25조 관련)

|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 가 점     |
|---------------------------------|---|---------|
| 1. 새로운 업무발굴, 업무<br>관련 창안 및 업무개선 | ① 업무관련 제안(창안) 채택자<br>○ 中央제안<br>- 금 상 1.5<br>- 은 상 1.2<br>- 동 상 1.0<br>- 장려상 0.8<br>- 노력상 0.5<br><br>○ 道제안<br>- 금 상 1.2<br>- 은 상 1.0<br>- 동 상 0.8<br>- 장려상 0.5<br>- 착안상 0.3<br><br>○ 市(자체) 제안<br>- 금 상 1.0<br>- 은 상 0.8<br>- 동 상 0.5<br>- 장려상 0.3<br>- 노력상 0.2<br><br>※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 | 1.5점 이내 |
|                                 | ② 담당분야 새로운 업무 발굴 및<br>개선실적이 탁월한 자<br>(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br>○ 탁 월 0.5<br>○ 우 수 0.25  | 0.5점 이내 |

|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 가 점   |
|---|--|---|
|   | ③ 자원봉사활동 우수자<br>(자원봉사센터 등록자로서 센터에서<br>인증하는 봉사실적시간)<br>○ 기간 내 30시간 이상<br>○ 기간 내 20~30시간 미만<br>○ 기간 내 15~20시간 미만<br>※ <a href="http://www.1365.go.kr">http://www.1365.go.kr</a> 에서<br>본인이 직접출력 제출  | 0.25점 이내<br><br>0.25<br>0.20<br>0.15  |
| 2. 예산절감기여 (제도, 기술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만 인정)  | ④ 예산절감액<br>○ 연간 1억원 이상<br>○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br>○ 연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0.7점 이내<br><br>0.7<br>0.5<br>0.3  |
| 3. 시책·업무추진 우수<br><br>※ 취합 또는 업무보조자는 해당 점수의 50%만 부여<br>※ 동일업무로 연속 수상시 1점한도내 부여 | ⑤ 심사분석, 업무추진, 및 평가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br><br>○ 중앙부처 또는 전국단위평가 (민간기관 공동평가 포함)<br>- 최우수(1위)(실무자, 실무팀장)<br>- 우 수(2위)(실무자, 실무팀장)<br>- 장 려(3위)(실무자, 실무팀장)<br><br>○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평가<br>- 최우수(1위)(실무자, 실무팀장)<br>- 우 수(2위)(실무자, 실무팀장)<br>- 장 려(3위)(실무자, 실무팀장) | 1.0점 이내<br><br><br><br><br>각 1.0<br>각 0.7<br>각 0.5<br><br><br>각 0.7<br>각 0.5<br>각 0.3 |
|   | ⑥ 친절도 측정 우수자 및 시민 추천 친절공무원<br>- 친절공무원으로 2회 이상 선정<br>- 친절공무원으로 1회 선정  | 1<br>0.5  |

|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가 점  |   |
|-----------------------|--|---|
|                       | <p>⑦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li> <li>- 우 수</li> <li>- 장 려</li> </ul> <p>※총괄부서 자체평가 후 선정 통보자</p>  | <p>3점 이내</p> <p>3</p> <p>2</p> <p>1</p>   |
|                       | <p>⑧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li> <li>- 우 수</li> <li>- 장 려</li> </ul> <p>※총괄부서 자체평가 후 선정 통보자</p>  | <p>3점 이내</p> <p>3</p> <p>2</p> <p>1</p>   |
| <p>4. 국내외 기업유치 유공</p> | <p>⑨ 인정가액(투자액×0.06%×기여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만원 이상</li> <li>- 1,600만원 ~ 2,000만원 미만</li> <li>- 1,000만원 ~ 1,600만원 미만</li> <li>- 800만원 ~ 1,000만원 미만</li> <li>- 600만원 ~ 800만원 미만</li> <li>- 400만원 ~ 600만원 미만</li> <li>- 200만원 ~ 400만원 미만</li> </ul> <p>(단, 업무관련자는 해당점수의 50% 부여)</p> | <p>3.0점 이내</p> <p>3</p> <p>2.5</p> <p>2</p> <p>1.5</p> <p>1</p> <p>0.5</p> <p>0.3</p> |
| <p>5. 청렴활동 우수</p>     | <p>⑩ 청렴활동 우수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실 청렴활동 평가결과 상위 5명</li> </ul>  | <p>각 0.1점</p>   |
| <p>6. 출산장려 정책 이행</p>  | <p>⑪ 자녀 출산 공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출산</li> <li>- 둘째 출산</li> <li>- 셋째 출산</li> <li>- 넷째 출산</li> </ul> <p>※ 자녀 출산 후 출산한 당시 직급 내 원하는 시기에 가점 신청</p> <p>※ 부부공무원일 경우 각각 적용</p> <p>※ 첫째는 2020.1.1. 이후, 둘째는 2019. 1. 1. 이후, 셋째·넷째는 2018. 5. 1. 이후 출산한 공무원부터 적용(소급 불가)</p>                     | <p>3.0점 이내</p> <p>1.0</p> <p>1.5</p> <p>2.5</p> <p>3.0</p>                            |

[별표 16] <개정 2025. 5. 16.>

결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 임용예정 계급               |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 교육<br>공<br>무<br>원     | 대학, 교육대학,<br>전문대학(사립학<br>교 및 동부설연구<br>소의교원 포함) | 부 교수<br>조 교수           | 조 교수<br>전임강사<br>(2년이상) | 전임강사                   |                        |       |     |
|                       | 고등학교   | 24 호 봉<br>이 상 의<br>교 원 | 16 호 봉<br>이 상 의<br>교 원 | 12 호 봉<br>이 상 의<br>교 원 | 11 호 봉<br>이 하 의<br>교 원 |       |     |
| 정부투자기관 및<br>정부산하기관·단체 |  | 부 장                    | 과 장<br>(차 장)           | 계 장<br>(대리)            | 평 사 원<br>(3년이상)        | 평 사 원 |     |

[별표 17] <개정 2025. 5. 16.>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예정직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관련) 응시자격 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 직위군 | 응시자격요건  |
|-----|---|
| 가군  | 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군  | 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br>4. 8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5.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다군  | 1. 관련분야 8·9급 특채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br>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비고: 1. 응시요건 중 가군,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 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      |              |               |
|----------------|------|--------------|---------------|
| <b>※응시번호</b>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              | (한자)          |
| 생년월일           | -    | 복수국적<br>해당여부 |               |
| 주 소            | (우 ) |              | 수입증지<br>붙이는 곳 |
| 전자우편           |      |              |               |
| 전 화<br>(휴대전화)  |      |              |               |

**응 시 표** ( ) 임용시험

|                           |  |                |  |
|---------------------------|--|----------------|--|
| <b>※응시번호</b>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
| 성명                        |  |                |  |
| 20    년    월    일<br>○○○장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5. 16.>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                            |         |  |                     |     |           |      |
|-----------|----------------------------|---------|--|---------------------|-----|-----------|------|
| ※등록번호     |                            | 제 회 번   |  | ③ 응 시 연 도<br>및 회 수  |     | ( )년도 제 회 |      |
| ※ 급       |                            | 직       |  | 응시지구(기호)<br>응 시 번 호 |     | 지구 번      |      |
|           |                            |         |  | 직 급 별               |     | 급 직       |      |
| ① 성 명     | (한글)                       |         |  | ② 희망지역              |     | ※ 등록심사    |      |
|           | (한문)                       |         |  | 제1지역                | 시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           | (영문)                       |         |  | 제2지역                | 시군  | ㉑         | ㉑    |
| ④ 주 소     |                            |         |  |                     |     | (사진부착)    |      |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                     |     |           |      |
|           | 휴 대 폰 :                    |         |  |                     |     |           |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  |                     |     |           |      |
| ⑦ 학 력     |                            |         |  |                     |     |           |      |
| 부터        | 까지                         | 학 력     |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         |  | ⑨ 상 별               |     |           |      |
| 연 월 일     | 종 별                        |         |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경 력     |                            |         |  |                     |     |           |      |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                     | 발령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  
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회망지역은 제1회망, 제2회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계 급 | 직 렬 | 추천인원수 | 임용자수<br>(임용예정자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발 신 기 관 명)

|     |
|-----|
| 직 인 |
|-----|

1. 임용자 명단

| 등록번호 | 성명 | 임용연월일 | 임용직급 | 임용직위 | 비고 |
|------|----|-------|------|------|----|
|      |    |       |      |      |    |
|      |    |       |      |      |    |

2. 임용불응자 명단

| 등록번호 | 성명 | 임용불응사유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 5. 1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5. 5. 16.>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br>기<br>적<br>감<br>재<br>정<br>용<br>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성명    | (한글) |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우 수     |  |
|                       |  | 보 통     |  |
|                       |  | 미 흡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 서식]

##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      |
|--------------------------------------|---------------------------------|--|--|--|--|-------|------|
| 필<br>기<br>적<br>감<br>재<br>정<br>용<br>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  |  |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  |  |  | 응시번호  |      |
|                                      | 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  |  |  |       | 성명   |
|                                      |                                 |  |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 불합격 |  |
|                       |  | 담 당 확 인 |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